

단기보호 자체점검 보고서

◆ 기관정보

기 관 명		기관기호	
대 표 자		시 설 장	
소 재 지			
급여종류	☐ 단기보호		
수급자	명	종사자	명
전화번호		팩 스	

◆ 자체점검일 및 점검자

점검일자	직위(직종)	점검자1 (서명)
20 . . .		(서명)
점검일자	직위(직종)	점검자2 (서명)
20 . . .		(서명)

□ 점검방법

◆ 매뉴얼의 평가방법에 '현장'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은 자체점검 대상임

단번호 19 소방시설	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 [2. 환경 및 안전 / 3. 안전관리 / 2. 재난 및 응급상황]	점수 2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

■ 평가방향 [2종 : 주, 단]

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.

■ 평가기준

평가기준		평가방법
①	소화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• 필수사항 : 일자, 점검내용, 점검자명	기록
②	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• 필수사항 : 일자, 시간, 장소, 참가자명, 내용 - 참석률,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	
③	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,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	현장

- ① 『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Ⅱ*』를 토대로 기관의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이 함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합니다.

*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[게시번호60424] '2020년 장기요양기관 (재가급여) 정기평가 계획' 첨부(붙임3) 참조

※ 2가지 이상 묻는 항목의 경우 1개라도 미충족하면 'N'으로 체크

- ② 지표별 [판단근거 및 조차사항]에 자체점검 결과가 N인 사유와 조치사항을 작성합니다.

※ 필요시 사진, 동영상, 화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

- ③ 내용 수정 시, 원 글자 위에 두 줄을 긋고 서명한 후 수정할 내용을 작성합니다. ... 화이트(수정테이프) 사용 지양

- ④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최종 확인 후 평가당일 평가자에게 자체 점검보고서 원본을 제출합니다.

※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(자료제출 거부 포함)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」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

□ 작성예시(파랑색)

지표14 시설기준	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.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시설기준을 준수함			
-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 존치 -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 ★ 최근 지자체 신고한 평면도(층별) 사본 첨부	☒	☐	이용자 12명으로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각각 유지하여야 하나 프로그램실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당일까지 개선하겠음
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9](p9)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.			

지표16 낙상예방 환경조성	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	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외부출입구(자동열림장치), 계단(자동열림장치)과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… 잠김 여부 확인			
- 외부출입구(자동열림장치) - 계단(자동열림장치) - 주방(잠금장치)	☒ ☐ ☒	☐ ☒ ☐	계단 자동열림장치 미설치 상태로 올해 안에 설치하겠음
②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			
- 전기콘센트(플러그형 마개 사용) - 덮개 불인정 - 부탄(프로판)가스, 세제 - 칼, 가위 등	☒ ☒ ☒	☐ ☐ ☐	10.13. 점검시 프로그램실 일부 덮개형 마개만 사용하고 있는 것 확인되어 10.15. 플러그형 마개 준비하여 바로 조치함.
③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… 노출된 벽면 모두 설치			
- 복도(양쪽벽면) - 목욕실(욕조, 샤워기마다) - 프로그램실 - 세면대 - 변기주위 - 수급자 접근 가능한 싱크대	☒ ☐ ☒ ☒ ☒ ☐	☐ ☒ ☐ ☐ ☐ ☒	샤워기 3개 ^{강건강} 4개 중 1개 주위와 거실 싱크대 주위 안전손잡이 미설치하여 바로 보완해서 평가당일까지 설치하겠음
④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			
목욕실, 화장실 등	☒	☐	10.13. 점검시 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마모되어 있어, 10.15. 미끄럼방지 매트 구입하여 조치함.
⑤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턱을 제거함			
- 생활실 - 프로그램실 - 식당 - 화장실, 목욕실	☒ ☒ ☒ ☐	☐ ☐ ☐ ☒	목욕실 문턱은 구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완만하게 고정식으로 경사처리 하겠음

* 평가기준에는 확인방법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… 상세내용은 매뉴얼 참고

□ 용어설명

- (게시)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
- (비치)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선반 등에 갖추어 두는 것
- (보관)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두고 관리하는 것

☐ 자체점검표

지표10 개인정보보호	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		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			
• 잠금장치가 정상 작동함	☐	☐	

지표12 식당 및 조리실	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.		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	☐	☐	
② 식당, 조리실, 식품 보관실, 냉장(동)고를 청결하게 관리함			
• 식당, 조리실	☐	☐	
• 식품 보관실, 냉장(동)고	☐	☐	

지표13 감염관리활동	기관은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.		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음			
• 손세정제(손소독제) 비치 -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 대체 가능	☐	☐	
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분리함			
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(덮개가 있는 보관함)	☐	☐	

지표14 시설기준	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.		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시설기준을 준수함			
•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 존치	☐	☐	
•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	☐	☐	
★ 최근 지자체 신고한 평면도 사본 첨부			
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9](p9)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.			

지표15 실내환경	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.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기관 내부*의 채광이 적정함			
•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음	☐	☐	
② 기관 내부*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, 환기장치가 작동함			
•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음	☐	☐	
• 환기장치 설치	☐	☐	
③ 기관 내부*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			
• 층별 온·습도계 비치	☐	☐	
* '기관 내부'란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인 생활실, 프로그램실, 식당, 화장실 등을 의미함			

지표16 낙상예방 환경조성	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	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외부출입구(자동열림장치), 계단(자동열림장치)과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... 잠김 여부 확인			
• 외부출입구(자동열림장치)	☐	☐	
• 계단(자동열림장치)	☐	☐	
• 주방(잠금장치)	☐	☐	
②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			
• 전기콘센트(플러그형 마개 사용) - 덮개 불인정	☐	☐	
• 부탄(프로판)가스, 세제	☐	☐	
• 칼, 가위 등	☐	☐	
③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... 노출된 벽면 모두 설치			
• 복도	☐	☐	
• 목욕실(욕조, 샤워기마다)	☐	☐	
• 프로그램실	☐	☐	
• 세면대	☐	☐	
• 변기주위	☐	☐	
• 수급자 접근 가능한 싱크(개수)대	☐	☐	
④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			
• 목욕실, 화장실 등	☐	☐	
⑤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턱을 제거함			
• 생활실	☐	☐	
• 프로그램실	☐	☐	
• 식당	☐	☐	
• 화장실, 목욕실	☐	☐	

지표18 응급체계	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생활실, 화장실,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			
• 생활실	☐	☐	
• 화장실	☐	☐	
• 목욕실	☐	☐	

지표19 소방시설	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③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,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			
• 비상구 및 유도등 설치 (유도등 항상 켜져있어야 함)	☐	☐	
• 피난안내도 부착	☐	☐	

지표23 존엄성 배려	기관은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.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침실을 남녀로 구분함 (부부 수급자 같은 침실 사용 가능)	☐	☐	
② 침실 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함 - 성명 모두기입 또는 홍○동 - 홍○○ 불인정	☐	☐	
③ 침실에 개인물건 수납공간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	☐	☐	
④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하거나, 침대마다 커튼을 설치함(1인실 제외)			
커튼, 칸막이가 제 기능을 함 ★ 반드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	☐	☐	

지표26 수급자 알권리 보장	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.
-----------------	-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			
•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	☐	☐	
• 인력현황표	☐	☐	
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	☐	☐	
• 프로그램표	☐	☐	
• 근무현황표	☐	☐	
• 노인학대 신고기관	☐	☐	
• 비상연락체계	☐	☐	
• 화재/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	☐	☐	

지표33 식단표 및 음식상태	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절한 상태로 제공합니다.		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②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	☐	☐	
③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	☐	☐	
④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			
• 위생모 착용	☐	☐	
• 복장 청결상태	☐	☐	

지표34 약품관리	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		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평가기준	Y	N	판단근거 및 조치사항
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- 냉장고에 약품 보관한 경우 냉장고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 확인	☐	☐	

☐ 컨설팅 평가 (※공단직원 작성)

구 분	내 용
위생관리 (지표12)	
감염관리 (지표13)	
시설기준 (지표14)	
안전상황 (지표16,18,19)	
정보제공 (지표26)	
기 타	

상기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구 분	성 명
장기요양기관장	(서명)
평 가 팀 장	(서명)
평 가 팀 원 1	(서명)
평 가 팀 원 2	(서명)
평 가 팀 원 3	(서명)

*** 참고**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[별표9]

시행규칙제2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[별표9] <개정 2019.9.27.>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9조제1항 관련)

2. 시설 및 설비 기준

나.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

구 분	침실	사무실	의료 및 간호사실	프로 그램실	물리 (작업) 치료실	식당 및 조리실	화장실	세면장 및 목욕실	세탁장 및 건조장
이용자 10명 이상	○	○		○		○	○	○	
이용자 10명 미만	○	○		○		○		○	

비고

1. 주·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,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.
(가)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,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.
(나) 프로그램실과 물리(작업)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,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.
2. 주·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.
3. 주·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